

IRP 계좌 절세 활용 가이드

세액공제부터 퇴직금 이연, 연금 수령 과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전 자료

이 자료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이미 가진 사람과 신규로 만들려는 사람 모두를 위한 실전 활용서입니다. 섹션 순서대로 읽으며 본인의 연봉·퇴직금·ISA 보유 여부에 해당하는 절세 포인트를 표와 체크리스트로 바로 확인하세요.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가입 전후 실제 점검용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P란 무엇이고 누가 가입할 수 있나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노후 대비 절세 계좌입니다.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확대), 퇴직금 수령자 모두 가능
- 연금저축(펀드·보험)과 별도로 추가 개설 가능하며 두 계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 운용 상품: 예금, 채권, ETF, 펀드, 리츠(RP) 등 — 단,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편입 가능
- 55세 이후,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퇴직금 이체분은 5년 요건 예외)
-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정 사유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법(2026년 현재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IRP만 단독으로 가입해도 900만원 전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합산 한도: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추가분 포함 총 900만원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
- 50세 이상 한시적 추가 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900만원 한도는 유지되고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최신 한도를 재확인할 것

연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 예시(연 900만원 전액 납입 가정)

구분	세액공제율	900만원 납입 시 환급 예상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약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약 118만 8천원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의 절세 효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고, 실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됨(과세이연 효과)
-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연금 수령 10년 초과 시 60%로 추가 인하)
- 일시금으로 다시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정산되어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핵심
- 퇴직금이 크지 않더라도 IRP 이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 — 즉시 생활자금이 필요하면 일반 계좌 수령도 가능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구조

연금 수령 시에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수령액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율: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짐)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합산)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
-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 신고
-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는 것이 세율 구간 관리에 유리

ISA 만기자금 연계 추가 절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IRP·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전 절세 사례 모음

사례	상황	절세 포인트	효과
사례 1	30대 직장인, 연금저축 400만원 + IRP 500만원 납입	합산 900만원 한도를 채움	16.5% 적용 시 약 148만 5천원 환급
사례 2	퇴직금 5,000만원 발생, IRP로 전액 이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후 연금 수령	일시금 대비 세액 30~40% 절감 효과
사례 3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IRP로 전환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최대 약 49만 5천원 추가 환급

가입·운용 전 최종 점검

- ☐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 합계가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구간을 확인해 본인 적용 세액공제율(16.5% / 13.2%)을 파악했는가
-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할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자금 필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했는가
- ☐ 55세, 가입 5년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확인했는가
- ☐ 운용 상품 구성(위험자산 70% 한도)이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지 점검했는가
- ☐ 연말정산 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실제 반영 여부를 재확인했는가

실무 팁

- › 12월에 몰아서 납입해도 같은 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한도를 재점검해 추가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 여러 금융기관에 IRP를 나눠 가입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분이 기타소득세(16.5%)로 추징될 수 있어, 단기 자금 목적이거나 가입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세액공제 한도, 세율, ISA 연계 한도 등 제도 세부 내용은 세법 개정예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납입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입할 금융기관 공지사항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